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94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유동수 · 윤준병 · 김남근
이인영 · 강준현 · 김용만
전현희 · 전용기 · 한정애
박민규 · 이춘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행정규제를 규정·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규정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

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유사 행정규제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유사 행정규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나. 유사 행정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안 제7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공공기관이 유사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절차 적용 근거를 마련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 부과(안 제19조제1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기관의 규정을 자체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함.

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유사행정규제 심사 및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권한 신설(안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등)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유사 행정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다. 그 밖에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

7. “유사 행정규제”(이하 “유사규제”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세칙·예규·약관 등의 규정을 통하여 국민(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를 “규제 및 유사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유사규제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이 유사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사규제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제”는 “유사규제”로, “법령등”은 “공공기관 규정”으로 본다.

④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기존규제의 정비”를 “기존규제 등의 정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기존규제의 자체정비)”를 “(기존규제 및 유사규제의 자체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존규제”를 “기존규제 및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규제”를 “규제 및 유사규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규제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이 유사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규제 및 유사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의2(유사규제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이 유사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사규제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생략)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신설>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제”는 “유사규제”로, “법령등”은 “공공기관 규정”으로 본다.

④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존규제 등의 정비

제19조(기존규제 및 유사규제의 자체정비) ① -----

---기존규제 및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능) ① -----

--.

1. (현행과 같음)
2. 규제 및 유사규제-----

3. ~ 6. (현행과 같음)
7.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

<p>7. (생략) ② (생략)</p>	<p><u>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